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79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김준형・서왕진・신장식

이해민 • 이재강 • 박은정

정혜경 • 박지원 • 권칠승

김재원 • 백선희 • 강경숙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일 관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 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은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중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 (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을 "남북교류·협력을"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 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 런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은 남한 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남한</u> 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 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 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 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 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 다. <신 설>	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거나관련활동을수행하는기관또는단체를지원하여야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